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보

http://www.seo.incheon.kr/

선람	기관의장

제841호 2011. 8. 16.(화)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865호 인천광역시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8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868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 선정 공고 ---------- 1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870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2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871호 신조 공인 공고 ---------- 23

회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865호

인천광역시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8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특수경력직 인사제도 개선계획('09.12.17) 및 조례 표준안 통보(2010.7.8)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규정 신설, 임용자격기준, 시간제 근무 도입 등 그 동안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반영

2. 주요내용

○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안 제4조제3항)

-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명시

○ 임용 시 공고 생략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 교육훈련 이수기회 부여(안 제8조의2)

○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12조)

- 일반직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

○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전화 560-4102) 에게 제출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3급상당 이상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4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5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급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7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급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급상당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 고

○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8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8.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이「지방공무원법」 개정(2011.5.23)으로 폐지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개정(2011.5.23)으로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 폐지

-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4호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조문 내용 삭제(2011.5.23)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8월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번지 /☎ 032-560-4102/Fax032-560-4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붙임 1]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출년월일 : 2011. 7 .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제 안 이 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 개정·시행(09.1.1) 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명문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 요 내 용

○ **명예퇴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당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규칙에 명문화(안 제3조 및 별표 1)**

- 신청기간 : 명예퇴직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일 ~ 15일
- 명예퇴직 예정일 : 짝수 달 마지막 날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명시된 내용 정리·삭제**

-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재직기간 및 지급액 계산방법
- 대간첩작전 등 수행으로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한 가산지급 기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명기)

○ **개정된 내용에 맞게 서식 변경 및 일부 미비점 보완**

▢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수당지급규정”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를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	①소 속		③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④직(계)급 (호봉)	
	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⑤성명 한 글		⑥주민등록번호			
	⑤성명 한 자		⑦ 주 소	□□□-□□□		
	⑧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소속기관기재란	⑫ 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 년	(세, 년)		
	⑭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⑮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년 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확인	인사담당관 (인)	연금담당관 (인)		감사담당관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서장 직인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뒤 쪽)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직(계)급·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⑫ ~ □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함(□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기재)
7.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8. 비위·형벌사항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 제2호 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공무원 구 분	□일반직 □특정직( ) □기능직	직급 또는 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자택)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인	인사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서장 직인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 하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2011- 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868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 선정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 서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26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탁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청
2. 위탁지정신청자의 자격요건
 ①「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②「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③「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에 의한 옥외광고 · 건축 ·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④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분야별로 검사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② 사무실(30㎡ 이상)
 ③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그 밖에 안전도검사 필요시설 및 장비
4. 위탁기간 : 선정일로부터 2년
5. 위탁받을 자의 임무
 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 실시
 ② 안전도검사업무 수행 중 허가된 사항에 위반한 사실 발견 시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 등

6. 위탁지정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① 신청기한 : 2011. 08. 12. ~ 08. 26. 18:00 까지
(기간내 접수분에 한함)

② 접수방법 : 공고기간 내 서구청 녹지경관과로 직접제출

③ 제출서류

- 서구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5조 ③항 "별지 제5호 서식(위탁지정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자격, 시설기준 관련 구비서류 제출
  ·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관련증빙서류 1부.
  · 검사인력·시설·장비 등 확보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위탁지정 경력 증빙서류(해당시 제출) 1부.
  · 기타 업체의 자산규모, 업무수행관련 보험가입실태 등 증빙서류 1부.

7.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중에서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한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위탁업체는 1개 업체로 선정)

8. 공고기간 : 2011. 08. 12. ~ 08. 26.

9. 기타 문의사항 : 서구청 녹지경관과 광고물 관리팀(☏560-4180)

2011. 8.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870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2. 사업자성명 : 인천광역시장 송 영 길
3.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남동구 운연동(인천대공원)
4. **열 람 기 간 : 2011. 8. 17. ~ 2011. 8. 31.**
5. 열 람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902~3)
6. 의견서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7. 본 공고에 대한 세부목록(재결신청서 및 사업자 제시액 조서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시책지원팀(☎032-560-5902~3)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수용재결 대상 소유자 명단 1부

2011. 8. 17.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수용재결 대상자 명단

구분	물건지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1	백석동 51-267	이미영	서울 양천구 신정6동 목동아파트 1303-801	-	토지
2	백석동 54-19, -1	이란숙	경기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65-26	서인천농협	토지
3	백석동 55-20, -9	권연화	인천 서구 백석동 104	-	토지
4	백석동 217-5, -2	전동욱	인천 서구 검암동 216	-	토지
5	검암동 370-25	진제섭	인천 서구 검암동 595-3 서해그랑블아파트 104-1106	-	토지
6	검암동 370-25	진명섭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58	-	토지
7	검암동 산72-26, -28	유숙경	인천 서구 검암동 244-2	-	토지
8	검암동 산 72-30	김성진	인천 서구 검암동 645-1 TS센트리아빌 A-302	서인천농협	토지
9	연희동 35-26	김옥곤	인천 서구 심곡동 285 대동주택아파트 102-703	농협업 협동조합, 부평농업 협동조합	토지
10	연희동 35-27	홍의희	인천 서구 연희동 739-3 1층(현대가구)	-	토지
11	검암동 370-25	진명섭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58	-	물건
12	검암동 산 72-30	김상근	인천 서구 검암동 530-7 몽베르타운하우스 3차 101-302	-	물건
13	검암동 244-44	이점숙	인천 서구 검암동 244-2	-	물건
14	검암동 244-45	김상근	인천 서구 검암동 530-7 몽베르타운하우스 3차 101-302	-	물건
15	연희동 35-27	홍의희	인천 서구 연희동 739-3 1층(현대가구)	-	물건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871호

신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의 인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8.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인신조 사유

- 통합민원발급기 설치 (연희동)

2. 공인의 사용 예정일 : 2011년 8월 29일

3. 신조공인 인영

"별첨 참조"

신 조 공 인 인 영

신조 공인명	규 격(㎝)	신조 공인인영	비 고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연희동통합민원1(종형)	2.4×2.4		통합민원발급기 설치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연희동통합민원1(횡형)	2.4×2.4		〃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연희동통합민원2(종형)	2.4×2.4		〃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연희동통합민원2(횡형)	2.4×2.4		〃

신 조 공 인 인 영

신조 공인명	규 격(㎝)	신조 공인인영	비 고
연희동장인 /연희동통합민원1 (종형)	2.1×2.1		통합민원발급기 설치
연희동장인 /연희동통합민원1 (횡형)	2.1×2.1		〃
연희동장인 /연희동통합민원2 (종형)	2.1×2.1		〃
연희동장인 /연희동통합민원2 (횡형)	2.1×2.1		〃